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규 정 집

제1호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규정집 제1호

2024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제위원회

법 제 위 원 장	前 학술교양분과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	이 윤 상
부법제위원장	제 3 대 학 술 교 양 분 과 위 원 장	박 하 성
법 제 위 원	중 앙 동 아 리 자 유 교 양 회 장	김 동 호
법 제 위 원	제 4 5 대 총 동 아 리 연 합 회 장	김 민 혁
법 제 위 원	제 4 5 대 부 총 동 아 리 연 합 회 장	김 민 호
법 제 위 원	중 앙 동 아 리 연 세 문 학 회 회 장	이 진 명
법 제 위 원	중 앙 동 아 리 연 세 국 궁 부 회 장	장 은 아
법 제 위 원	제 3 대 종 교 분 과 위 원 장	조 두 희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법 제 위 원 회

목차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2
제1장 총칙	4
제2장 의결기구	5
제3장 집행기구	12
제4장 자치기구	15
제5장 특별기구	19
제6장 심사	23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29
제7장 선거	30
제8장 재정	31
제9장 법제	32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	35
제1장 총칙	35
제2장 기록물의 생산	36
제3장 기록물의 관리	37
제4장 기록물의 보존	37
제5장 기록물의 종류	38
제6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	43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	45
제1장 총칙	46
제2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46
제3장 선거	48
제4장 동아리 총투표	59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	62
제1장 총칙	62
제2장 심사	62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	66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에 관한 세칙	70
제1장 총칙	70
제2장 운영·관리	70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	75
제1장 총칙	75
제2장 지원금	75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	77

총동아리연합회칙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1조 ~ 제5조
제2절 회원	제6조 ~ 제8조

제 2 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 ~ 제17조
제2절 동아리 총회	제18조 ~ 제25조
제3절 동아리 총투표	제26조 ~ 제32조
제4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3조 ~ 제45조
제5절 동아리운영위원회	제46조 ~ 제57조

제 3 장 집행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제58조 ~ 제62조
제2절 집행위원회	제63조 ~ 제67조의2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8조 ~ 제72조

제 4 장 자치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73조 ~ 제76조
제2절 중앙동아리	제77조 ~ 제81조
제2절의2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제81조의2 ~ 제81조의5
제3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제82조 ~ 제86조
제4절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제87조 ~ 제90조
제5절 단과대학 동아리	제91조 ~ 제92조
제6절 일반동아리	제93조 ~ 제96조

제 5 장 특별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7조 ~ 제103조
제2절 법제위원회	제104조 ~ 제108조
제3절 총동아리연석회의	제109조 ~ 제112조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	제112조의2 ~ 제112조의8

제 6 장 심사

제1절 등록 및 승격	제113조 ~ 제121조
제2절 징계 및 포상	제122조 ~ 제129조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제129조의2 ~ 제129조의6
----------------	-------------------

제 7 장 선거	제130조 ~ 제136조
----------	---------------

제 8 장 재정	제137조 ~ 제142조
----------	---------------

제 9 장 법제	제143조 ~ 제152조
----------	---------------



개정 연혁

연도미상 제정

1996.09.30 일부개정
2007.03.29 일부개정
2008.01.22 일부개정
2010.03.22 일부개정
2010.06.01 일부개정
2012.04.05 전부개정
2012.09.27 일부개정
2012.10.30 일부개정
2013.02.27 일부개정
2013.09.09 일부개정
2013.10.30 일부개정
2013.12.23 일부개정
2014.02.10 일부개정
2015.03.31 일부개정
2015.08.18 일부개정
2015.10.27 일부개정
2015.12.23 일부개정
2017.10.26 일부개정
2018.01.31 일부개정
2018.03.21 일부개정
2018.06.28 일부개정
2018.07.20 일부개정
2018.08.30 일부개정
2018.09.30 일부개정
2018.12.27 일부개정
2021.04.28 일부개정
2022.10.05 일부개정
2022.11.29 전부개정
2023.03.14 일부개정
2023.09.27 일부개정
2024.02.01 일부개정
2024.06.25 일부개정
2024.07.30 일부개정
2024.09.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제1조(총동아리연합회의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약칭 연세대학교 총동연, 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으로는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약칭 YONSEI G.S.C.U.)라 표기한다.

제2조(총동아리연합회의 소재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소재로 한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제3조(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

본회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대학 문화 창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회원의 역량을 모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학내 동아리 사회 발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선도하며 학생 자치활동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총동아리연합회의 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3. 자치기구: 분과위원회,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동아리
4. 특별기구: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위원회, 총동아리연석회의

제5조(총동아리연합회의 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아리 자활을 위한 활동
2. 동아리 간 유대를 위한 사업
3. 동아리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4.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
5. 기타 동아리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절 회원

제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입학, 편입학, 소속변경 등으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이하 본교) 학부과정 소속이 된 재적생이면서 통상적으로 소관 기관에 따라 구분한 다음 각 호의 구성원으로 하되, 본회에 정식 등록된 단체만을 인정한다. 다만, 대학원생, 국내외 타대학에서 본교로 수학하러 온 교환학생, 미래캠퍼스 학생, 어학당 학생 등은 본교 학부과정 소속 재적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중앙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2. 국제캠퍼스 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
3. 단과대학 동아리(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
4. 일반동아리(기타)

② 본조 제1항제1호의 중앙동아리의 경우 재등록 및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등록되며 요건에 따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구분한다.

③ 본조 제1항제2호의 경우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야 등록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활동에 관련한 제반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동아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④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⑤ 제6조제1항제1호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9조(의결기구의 기본이념)

본회의 의결기구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10조(의결기구의 위계)

-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위계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순서로 한다.
- ②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결기구의 의장)

본회의 각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각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의사 정족수)

- ① 각 의결기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결위 구성원은 재적 구성원에서 제한한다.
- ③ 회의 중 본조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각 의결기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결기구의 사무)

의결기구의 사무처리는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의결기구는 해당 사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기구의 기록 및 공개)

의결기구의 회의 내용은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7조(의결기구에 관한 세칙)

기타 각 의결기구에 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절 동아리 총회

제18조(동아리 총회의 지위)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9조(동아리 총회의 권한)

동아리 총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토론 및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제20조(동아리 총회의 구성)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1조(동아리 총회의 의장)

- ① 동아리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동아리 총회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총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23조(동아리 총회의 소집)

- ① 동아리 총회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을 공고한다.
- ② 동아리 총회 소집은 집회 7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집회 3일 이전에 소집을 안건과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24조(동아리 총회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 총회는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25조(동아리 총회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동아리 총투표

제26조(동아리 총투표의 지위)

동아리 총투표는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투표이다.

제27조(동아리 총투표의 권한)

총투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의결
2.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28조(동아리 총투표의 투표권)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 중 총투표 투표인단으로 등록된 사람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29조(동아리 총투표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총투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30조(동아리 총투표의 실시)

- ① 동아리 총투표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한다.
- ② 동아리 총투표 실시는 투표 10일 이전에 안건과 함께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투표 5일 이전에 실시를 안건과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31조(동아리 총투표의 성립 요건)

동아리 총투표는 총투표 투표인단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한다.

제32조(동아리 총투표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총투표의 안건은 투표한 투표인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33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지위)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제34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 활동 계획 심의 및 의결
2. 총동아리연합회칙 개정
3. 결산 심사
4. 동아리 총회 소집 요구
5.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탄핵 총회 상정안 심의 및 의결
6. 집행위원회 체계 및 인선 인준
7. 집행위원회 해임 의결
8. 중앙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등록 인준
9. 준동아리의 정동아리 승격 인준
10. 중앙동아리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11. 집행위원회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12. 기타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35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3. 각 중앙동아리의 대표자
4.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
5.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

제36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장)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일 때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7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5호의 경우 제61조제1항을, 제34조제11호의 경우 제129조의3제6항을, 징계의 불복에 따른 징계 무효 안건의 상정은 해당 조문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38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소집)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5월, 9월, 12월 말에 소집한다. 단, 전후 7일 이내의 소집은 정기회의로 인정한다.
- ③ 임시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안건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공고한다.
- ④ 정기회의의 소집은 집회 14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 ⑤ 임시회의의 소집은 집회 3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39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 대표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40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사 진행)

- ①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소속된 단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논의 및 표결 후에 안건에 관련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발언은 가능하다.
- ② 의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량한 참석자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의사 진행에 협조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2회의 권고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의장은 해당 참석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본조 제2항에서 퇴장당한 참석자가 동아리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해당 동아리를 결석 처리한다.

제42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공결)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공결로 정의한다.
-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정당하고 증명 가능한 사유로 결석을 사전 통보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공결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직계존속 및 친·인척(6촌 이내)의 경조사
 2. 국가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
 3.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
 4. 정부 또는 정부에 정식 등록된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
 5. 동아리의 연간 행사 중 중요한 일정이 동아리 대표자회의 일시와 중복될 때
 6. 기타 의장이 인정한 경우
- ③ 본조 제2항의 사전 통보는 동아리 대표자회의 공고된 개회시간 3시간 전까지 통보한 것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임인 정보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와 함께 의결권 위임의 의사를 밝힌 것을 말한다.
 1. 수임인의 성명

2. 수임인의 학번
3. 수임인의 연락처
4. 수임인의 소속 단위 내 직책

④ (삭제)

⑤ (삭제)

⑥ 의결권 위임의 수임인 자격은 본회에 등록된 임원에게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회에 등록된 임원이 아닌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동아리 회원도 수임인이 될 수 있다.

⑦ (삭제)

⑧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공결 시 수임인이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출석하고 사전 통보 및 의결권 위임 절차에 문제가 없을 때 해당 단위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⑨ 의장은 사전 통보 및 의결권 위임 과정에 있어 전자문서를 통한 절차를 도입하는 등 위임 절차에 있어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출결)

- ① 제42조에 의거하여 공결을 제외한 다른 여타의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출석, 지각, 조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석에 관한 기록은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삭제된다.
 1. 공고된 개회시간 후 15분 이내: 출석
 2. 공고된 개회시간 후 15분 초과 45분 이전: 지각
 3. 공고된 개회시간 후 45분 초과: 결석
 4. 회의의 모든 안건표결이 처리되기 전에 퇴장: 조퇴
- ③ 지각이나 조퇴를 합쳐 3회가 되었을 때에는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④ 6개월 이내에 지각과 조퇴를 거듭한 경우에도 본조 제3항과 같다.
- ⑤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수임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44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익명성)

- 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 ② 의장은 본조 제1항이 위배된다고 판단될 시 즉각 회의를 중단할 수 있다.
- ③ 본조 제1항이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은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본조 제3항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다.
- ⑤ 익명성 침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있다.
- ⑥ 의장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출석 확인 및 회의 진행 방식을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인준받아야 한다.
- ⑦ 공식적으로 단위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본회의의 구성원은 이에 관한 안건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⑧ 익명성 침해가 발생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7일 이내에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5조(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참관)

본회의의 회원은 누구나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5절 동아리운영위원회

제46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지위)

동아리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심사 및 의결기구이다.

제47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구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및 검토
2.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기구의 결정
3. 예산 심의
- 3의2. 동아리 총회 소집 요구
4.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
5. 중앙동아리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심사
6.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일반등록 심사
7. 준동아리의 정동아리 승격 심사
8. 중앙동아리 징계안의 심의 및 의결
9. 정기 지원금에 대한 배분 심사
10. 동아리운영위원회 단위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의 결정
11. 기타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제48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
2. 각 분과위원장
3.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

제49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

- ①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 단위인 경우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50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눈다.

1. 제1회기: 11월 선거 종료 직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회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회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회기: 2학기 개강일부터 11월 선거 종료 시까지

제51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에 판단에 따라 개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장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52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53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54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만장일치를 지향하되 의결 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 및 공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내용은 정해진 방식으로 기록하며, 기록된 내용은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 보호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동아리운영위원회의 참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에 따라 참관이 제한될 수 있다.

제57조(동아리운영위원회 일사부재의의 원칙)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을 동일한 회기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항에 관한 새로운 사실 혹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논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제58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지위)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위된 때에는 그 직을 승계한다. 결위 이외의 사유로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 행사를 못할 때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다음 각 호의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가 만료된다.

1. 다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60조(총동아리연합회장의 권한 및 의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의무를 진다.

1. 본회를 대표하며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 및 실시할 수 있는 권한
2.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장
3.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할 책임
4. 동아리 징계, 회칙 개정안, 예산 집행, 기타 중요 안건 발의 권한
5. 본회의 집행위원 임명 및 해임 권한
6. 본회 회원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할 의무
7. 본회 회원의 의사의 민주적 수렴과 이에 성실히 수행할 의무
8. 차기 총동아리연합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수인계를 할 의무
9. 기타 총동아리연합회 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

제61조(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탄핵)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 또는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본 회칙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안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탄핵안 상정 요건은 제143조제3호를 준용한다.
-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장은 안건 상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아리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만 한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면 당사자는 탄핵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④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에 심의 및 의결한다. 이때, 의결은 동아리 대표자회의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62조(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결원된 때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동아리운영위원 혹은 집행위원 중 1명을 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이때, 임기는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일까지로 한다.

제2절 집행위원회

제63조(집행위원회의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63조의2(집행위원회의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4조(집행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총괄 하에 본회 모든 사업의 집행을 맡는다.
- ②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사업 집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사업 중 시설 및 공간,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 재무, 법무 등 전문적·기술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세부 사안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집행위원회의 의무)

- ① 집행위원회는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 ② 집행위원회는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를 진다. 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66조(집행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 ① 집행위원회 체계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집행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67조(집행위원의 해임)

집행위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67조의2(집행위원회의 감사)

집행위원회는 제6장의2에 의한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3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8조(비상대책위원회의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결의 기간 동안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이다.

제69조(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와 총동아리연합회장단에 준하는 업무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진다.

제70조(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서 간선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본회 회원으로서 동아리운영위원직을 6개월 이상 수행한 전직 동아리운영위원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제70조의2(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단, 2학기 정기 선거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 선거가 모두 종료되고 7일 이내에 구성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가 무산될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이 모두 결위된 때
 3.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이 탄핵된 때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단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에 의한 구성은 차기 연도 분과위원회 위원장단 전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해당 연도 동아리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은 차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의 직을 수행한다.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과정(후보자 정보·투표 방식·투표 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선출 결과(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71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명 및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체계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72조(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다. 다만,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이 아닐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4장 자치기구

제1절 분과위원회

제73조(분과위원회의 지위)

분과위원회는 소속된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74조(분과위원장단)

- 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 ②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75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76조(분과위원회의 회칙)

분과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절 중앙동아리

제77조(중앙동아리의 지위)

중앙동아리는 본회의 자치기구로서 회칙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로 구분한다.

제78조(중앙동아리 대표자)

중앙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중앙동아리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79조(준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신규등록을 통해 준동아리가 된 동아리는 2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등을 통해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된 동아리는 1년 뒤 승격 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 ②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발언 및 의결 권한을 가진다.
- ③ 준동아리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 ④ 준동아리는 모든 정동아리가 자치공간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총동아리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자치공간이 남았을 경우 남은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⑤ 준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진다.
- ⑥ 준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0조(정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의 구성원만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동아리만이 본회로부터 정기 지원금과 자치공간에 대하여 보장받는다.
- ③ 승격 절차를 통해 정동아리로 승격된 동아리는 준동아리의 권한과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
- ④ 정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1조(중앙동아리의 회칙)

중앙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절의2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제81조의2(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지위)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국제캠퍼스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1조의3(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동아리운영위원이 된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을 보좌하고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81조의4(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업무 및 권한)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

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81조의5(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회칙)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3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제8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지위)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지부를 두며 본회 회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3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국제캠퍼스 동아리 지위를 얻는다.
- 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계획서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 명단(단, 한 단과대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 ③ 등록 절차는 제114조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제84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국제캠퍼스 Y-Plaza 내 자치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5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징계)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가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징계 처리할 수 있다.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징계와 관련된 조항은 제6장제2절과 관련된 조항을 준용한다. 단, 중앙동아리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한다.
- ③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경고 2회 누적 시 마지막 경고 부여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실시되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의 신청 자격을 박탈한다.

제86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회칙)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절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제87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지위)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각 단과대학 동아리를 대표하는 자치기구이다.

제88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권한 및 의무)

- 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단과대학 동아리 활동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불가피한 경우 필요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에 선거 등의 일부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9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

- ①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세칙을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제90조(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의무)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와 총동아리연석회의에 성실히 참석할 의무를 진다.

제5절 단과대학 동아리

제91조(단과대학 동아리의 지위)

단과대학 동아리는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자치기구이다.

제92조(단과대학 동아리의 업무 및 권한)

단과대학 동아리는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6절 일반동아리

제93조(일반동아리의 지위)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교내 동아리를 말한다.

제94조(일반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일반동아리는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로 인정되는 동아리, 학회 등을 의미한다.
- ② 일반동아리 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 계획서 1부

5.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1부

6. 발기인(회원)의 명부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일반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되는 것으로 한다.

제95조(일반동아리의 업무 및 권한)

일반동아리는 해당 일반동아리에서 본회의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제96조(일반동아리의 회칙)

일반동아리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특별기구

제1절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9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와 동아리 총투표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

제9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한다.

제99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00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도와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10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제10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3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타)

- ① 기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 ② 이외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렵거나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제2절 법제위원회

제104조(법제위원회의 지위)

법제위원회는 본회 회칙 개정 및 세칙 제·개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제105조(법제위원회의 역할)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회칙 개정안 또는 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2. 회칙 및 세칙 등(이하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에 관한 사항
4. 자치기구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6조(법제위원회의 구성)

- ① 법제위원회에 법제위원을 둔다.
- ② 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다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호의 자격을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이상
 2. 현직 동아리운영위원 중 2인
 3. 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상 4인 이하
 4. 전직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인 이하
- ③ 본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제위원의 구성 과정에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동아리운영위원이 아닌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이 선임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을 진행한 후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전체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임한다.

- ④ 법제위원은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인준을 받은 때로부터 법제위원으로서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 ⑤ 법제위원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 회의까지로 한다.
- ⑥ 법제위원은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법제위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 ⑦ 법제위원이 결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입 법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위원에 인준은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⑧ 11월 선거의 종료로 인하여 해당 단위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 법제위원 직위를 유지한다.

제107조(법제위원장단)

- ① 법제위원장단은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법제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법제위원장과 부법제위원장은 법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법제위원장단의 임기는 법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차기 년도 첫 동아리 대표자회의까지로 한다.
- ④ 법제위원장단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법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 선출하고 이를 동아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 선출된 법제위원장단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인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제108조(법제위원회 회의)

- ① 법제위원회의 의장은 법제위원장이 맡는다. 법제위원장이 결위 시 부법제위원장이 맡는다.
- ② 법제위원장단이 의장의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③ 회의는 일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의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④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법제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3절 총동아리연석회의

제109조(총동아리연석회의 지위)

총동아리연석회의는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 활동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제110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역할)

총동아리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체 동아리 활동에 관한 협의
2. 각 단위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의 결정
3.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에 관한 보고
4. 기타 총동아리연석회의 구성 단위에 관련된 사안의 협의

제111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구성)

- ① 총동아리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단
 2. 동아리운영위원
 3.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장
- ② 국제캠퍼스 동아리의 대표자는 총동아리연석회의의 배석자가 된다.

제112조(총동아리연석회의의 회의)

- ① 총동아리연석회의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사고가 있을 시 부총동아리연합회장이 맡는다.
-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 기준 전후 30일 이내로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4분의 1의 요구 혹은 의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④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총동아리연석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의장의 동의하에 가능하다.

제4절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

제112조의2(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지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종료 이후 업무의 연속성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112조의3(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역할)

-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총동아리연합회의 업무와 성과의 보고
 3. 총동아리연합회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4.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업무 보조
 5.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 부과한 징계의 근거와 내용의 보존
 6.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의결한 징계의 근거와 내용의 보존
 7. 그 밖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112조의4(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구성)

- ①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다만,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모두 결위된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 ③ 부위원장은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 중 1인이 맡는다. 다만,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 위원장이 아닌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위원이 맡는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동아리운영위원 혹은 집행위원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당선 선거운동본

부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이 맡는다.

- ⑤ 본조 제4항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다만,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 위원 전원을 위원장의 지명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은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잃게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 해산 시까지 해당 직위를 유지한다.
- ⑧ 본조 제7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당선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그 즉시 해당 직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여 신임 부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제112조의5(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설립)

- ① 인수위원회는 선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종료 3일 전까지 동아리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설립해야 한다. 제112조의4제8항의 신임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명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② 인수위원회는 선거 무산, 선거 부정, 당선무효, 선거무효,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의 당선 포기 등 사유로 인해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없는 경우에도 구성된다.

제112조의6(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회의)

-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수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2조의7(동아리 대표자회의로의 보고)

위원장은 선거 종료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인수인계 사항에 관해 보고한다.

제112조의8(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의 해산)

인수위원회는 제112조7의 보고가 종결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6장 심사

제1절 등록 및 승격

제113조(신규등록)

준동아리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신규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4조(신규등록 절차)

- ① 2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운영

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다만, 구비서류 미비에 한해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진행한다.

② 구비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신규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신규등록이 인준된 동아리의 구비서류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제115조(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3. 회칙 1부

4. 최근 2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한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5.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6. 최근 2년간 결산안 1부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6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7. 동아리 지원금 사용 계획서 1부

8. 발기인의 총회 회의록

9. 발기인(회원)명단 1부

9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9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각각 50% 이하이어야 한다.

10. 발기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정회원(재적생)의 재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11. 중앙동아리 회원 100명 이상의 지지서명

11의2. 중앙동아리 등록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현 중앙동아리 대표자 5분의 2 이상의 서명을 포함해야 한다.

제116조(재등록)

중앙동아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7조(재등록 절차)

① 매년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의 인준을 통해 재등록하며, 그 대상은 중앙동아리에 한한다.

②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 마감 30일 전에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재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③ 재등록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다만, 구비서류 미비에 한해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차 심사를 할 수 있으며, 1차

심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진행한다.

- ④ 구비서류와 심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재등록 인준안을 상정한다.
- ⑤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 ⑥ 재등록이 인준된 동아리의 구비서류는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한다.
- ⑦ 신청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1시간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주의 처리한다.
- ⑧ 신청 서류 제출 기한 1시간 이후부터는 제출 연장 기한을 설정할 수 있고, 본 제출 기한으로부터 1주일을 넘길 수 없으며, 제출 연장 기한에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때에는 경고 처리한다.
- ⑨ 본조 제8항의 기한마저 초과하여 제출한 동아리는 탈퇴 안건 대상 동아리가 된다.
- ⑩ 권고 2회에도 불구하고 재등록 신청 서류를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동아리는 자진 탈퇴 의사로 간주하여 탈퇴 처리한다.

제118조(재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단체(중앙동아리) 재등록 신청서 1부
- 2. 지도교수 의견서 및 취임 승낙서 1부
- 3. 회칙 1부
- 4.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보고서 1부
- 4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5. 대표활동계획서 1부
- 6. 최근 1년간 결산안 1부
- 6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 6의3. 반드시 최근 1년간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 7. (삭제)
- 8. 회원명단 1부
- 8의2. 반드시 회원들이 소속된 단과대가 3개 이상이면서 총 30명 이상의 재적생이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 8의3. 특정 단과대 및 학번의 구성이 50% 이하이어야 한다.
- 9.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제119조(승격)

- ① 준동아리는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재등록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는 준동아리 모두를 대상으로 승격을 심사하되 그 자격은 제79조제1항에 의거한다.

제120조(승격 절차)

- ① 승격 절차는 동아리운영위원회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를 통해서 진행된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소집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 ③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승격 인준안을 상정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을 의결한다.
- ⑤ 승격 안건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1조(등록 및 승격의 기타)

기타 등록 및 승격에 관한 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을 따른다.

제2절 징계 및 포상

제122조(징계 알림)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가 적용된 동아리에게 3일 이내에 징계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사항을 징계 반영 이후 첫 대표자회의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징계 대상 동아리는 징계심사 판단의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3조(징계 유형 및 통칙)

- ① 징계 유형에는 시정 요구, 주의, 경고, 강등, 탈퇴가 있다.
- ② 동아리운영위원회 시정 요구, 의결을 통해 주의와 경고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강등과 탈퇴를 징계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전환한다.
- ⑥ 주의 및 경고 부과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주의 및 경고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당 동아리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5. 본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징계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3조의2(시정 요구)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 ④ 시정 요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 시정 요구 안건이 상정되었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발언 및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다.
3.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여부를 의결한다.
4. 동아리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 요구 내용을 의결한다. 이때, 시정 요구 내용은 본조 제1항의 사유에 한한다.
- ⑤ 시정 요구를 받은 동아리는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4조(주의)

-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의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대표자회의 지각 또는 조퇴 3회 누적
 2. 대표자회의 결석 1회
 3.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기한 초과 시
 4.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앞서 제출기한까지 선거인단 미제출 시
 5.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총투표 기간에 선거인단 중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았을 시
 6.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선거인단의 수가 최소인원에 미치지 못할 시
 7.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 ② 본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25조(경고)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경고 1회를 부과할 수 있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2. (삭제)
-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계를 부여할 수 없다.
- ③ 징계 부과 절차는 제123조제6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126조(강등)

- ① 강등 안건 대상 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을 시
 2. 재등록 구비서류가 미흡했을 시
 3. 경고 3회 누적 시
- ② 강등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을 상정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강등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동아리운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3의2. 의결 과정에서는 강등 안건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와 관련된 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을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 및 소명자료 배포를 할 수 있다.

5.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결이 될 때에는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어 일반동아리가 된다.
7. 부결이 될 때에는 경고 1회를 부여한다.
- 7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경고 1회 부여에 불복 시, 의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경고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8. 본항 제7의2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경고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7조(탈퇴)

- ① 탈퇴 안건 대상 동아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동아리운영위원회의 보고와 인준을 통해 처리된다. 그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재등록 구비서류 제출연장기한 초과 제출 시
 2. 본회 또는 본회를 구성하는 동아리 및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본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시
 3.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거나 도박이나 폭력 등의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 ② 탈퇴의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안건을 상정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동아리에게 탈퇴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3. 동아리운영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 과정을 진행한다.
 - 3의2. 의결 과정에서는 탈퇴 안건의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해야 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와 관련된 동아리운영위원회 회의의 기록을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4.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는 질의응답과 소명의 발언 및 소명자료 배포를 할 수 있다.
 5.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가결될 때에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7. 부결될 때에는 정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되고, 준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지위가 소멸되며 일반동아리가 된다.
 - 7의2. 해당 동아리가 부결에 따른 강등에 불복할 때에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불복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의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8. 본항 제7의2호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제기 시점에 동아리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탈퇴 무효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128조(징계 효력 및 삭제)

- ① 주의는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 ② 경고 1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정기 지원금을 5만원 삭감한다.
- ③ 경고 2회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15만원 삭감한다. 다만, 본조 제2항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의2 정기 지원금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기 지원금의 반으로 삭감한다.
- ④ 경고 3회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다.
- ⑤ 경고는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나면 차례로 삭제된다.
- ⑥ 탈퇴 처리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정받은 자치공간을 14일 내로 반

환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총동아리연합회장의 책임 하에 강제 집행한다.

⑦ 경고 3회 누적으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 정동아리는 강등 안건의 가결에 의하여 준동아리로 강등된 경우, 경고 3회를 삭제한다.

⑧ 경고 3회 누적으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강등 안건이 상정된 정동아리와 준동아리는 강등 안건의 부결에 의하여 경고 1회가 부여된 경우, 기존의 경고 3회를 삭제한다. 이는 경고 무효 안건이 가결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29조(포상)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는 동아리에 대하여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1. 재등록 신청 서류 평가가 우수할 경우
2. 확인 가능한 공적으로 인하여 대내외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포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의2 집행위원회 감사

제129조의2(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

- ① 집행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동아리운영위원(단, 총동아리연합회장단과 집행위원을 겸직하는 동아리운영위원은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 1인과 감사위원을 둔다.
- ③ 감사위원은 본조 제1항의 동아리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9조의3(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① 감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감사위원회는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감사 구비서류 및 그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 절차에 있어 증빙이 부족한 항목의 수와 그 액수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 ⑥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아리 대표자회의에 집행위원회 징계의 안을 상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⑦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⑧ 감사위원회는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 절차와 기준 등을 집행위원회에 올바르게 적용할 의무를 진다.
- ⑨ 감사위원회는 감사 실시로 인한 집행위원회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129조의4(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2. 임기 종료일까지의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3. 임기 시작일로부터 감사 일자까지의 결산안 1부
- 3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 3의3. 반드시 결산안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모두 첨부
- 3의4.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4. 연간 예산안 1부

제129조의5(집행위원회 감사 절차)

- ① 매년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로의 보고를 통해 진행하며, 그 대상은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에 한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감사 구비서류 제출 마감 30일 전에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 절차를 공고하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해당 기간 내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 ③ 감사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감사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구비서류를 감사한다.
- ⑤ 구비서류와 감사 기준에 흠이 없을 경우에 감사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제출하며, 당해 9월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 ⑥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29조의6(집행위원회 감사에 따른 징계)

집행위원회 감사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요구
2. 시정문 작성 요구
3. 환수 요구

제7장 선거

제130조(선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보통, 평등, 간접, 비밀, 자유선거로 한다.

제131조(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진다.

1.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 당 최소 30인에서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2. 국제캠퍼스 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당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의 회원
3.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당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제132조(피선거권)

- ①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 3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적생
 2.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8개월 이상 구성원으로 속한 자
- ② (삭제)

제133조(선거 시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 ② 자치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에 따른다.

제134조(보궐선거)

- ① 9월 전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 ③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135조(재선거)

- ① 사유를 불문하고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② 재선거는 정식 선거에 준한다.
- ③ 재선거를 하더라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로 한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로 새로운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무산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제136조(선거의 기타)

기타 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에 따른다.

제8장 재정

제137조(수입)

- ① 수입은 학생회비와 교비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②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 ③ 본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 ④ 각 사회단체의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138조(회계 연도)

본회의 예산은 4분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1. 제1분기: 당선 확정 공고 직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제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3. 제3분기: 1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4. 제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9조(예산)

- ① 예산은 본회의 수입으로 구성하며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에 편성한다.
- ② 예산은 본회의 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하여 반기별로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③ 예산은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140조(동아리 지원금)

본회의 동아리 지원금은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1조(결산)

- ① 경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의 관행에 준한다.
- ② 결산은 매 동아리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보고하고 승인받는다.

제142조(이월)

- ①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의 임기 개시 시 예산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임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꾸리는 본회의 수입으로 한다. 예산의 잉여금이 0원 미만일 경우, 전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을 진다.
- ② 이월 전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은 전대 집행위원회가 책임지고 지급하되, 불가피할 경우 후대 집행위원회가 이월 받는다.

제9장 법제

제143조(회칙 개정안의 상정)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한 경우
2. 동아리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3. 동아리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4. 본회의 회원 150인 이상의 연서를 통해 발의한 경우
5. 법제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동아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후 발의를 의결한 경우

제144조(회칙 개정안의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 신, 구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45조(회칙 개정안의 의결)

- ① 회칙 개정안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동아리 총회, 동아리 총투표, 동아리 대표자회의 중 하나에서 의결한다.
- ②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1. 동아리 총회에서 본회의 회원 300인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2. 동아리 총투표에서 총투표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선거인단 과반수의 찬성
 3.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제146조(회칙의 정리)

- ① 회칙의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② 정비에 관한 기준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공인한 법령 정비기준의 내용을 따른다.

제147조(회칙의 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148조(세칙의 정의)

- ①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위임하여 자세하게 명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 ② 본회의 세칙은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149조(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①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한다.
 1.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제150조(회칙 및 세칙의 해석)

- ① 회칙 및 세칙 해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법제위원회가 해석하고, 해석례를 작성하여 동아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해석례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이 결의된 경우에만 공인된다.
- ③ 회칙 및 세칙을 해석할 경우, 본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회칙 및 세칙 이외에 자치기구의 회칙 등의 경우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법제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51조(소급적용 여부)

- ① 본회 회원의 행위나 사건으로 인한 회칙 적용은 행위 완료 시점 당시의 회칙에 따른다.
- ② 누적된 징계의 효력은 회칙의 개정 시점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제152조(회칙의 흡결)

본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에 의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본교 규정이나 대한민국 헌법 및 그 하위 법규,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72조 2학기 정기 선거 무산이 아닌 사유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3년 12월에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법제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본 회칙의 공포 당시 법제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 106조에도 불구하고 회칙의 개정을 이유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며, 잔여 법제위원석에 대해 선임을 진행한다.

제2조(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의 정족수 가산에 대한 특례) 본 회칙의 공포를 통해 신설되는 단위
인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단에 대해서는 제13조, 제35조제4호, 제48조제3호, 제111조제1항4호에
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 각 의결기구의 의사 정족수 가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세칙

2024.11.0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하 ‘본회 회칙’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과 본회가 생산 및 수집하는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본 세칙에서 “기록물”이란 본회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 ② 본 세칙에서 “비공개기록물”이란 기록물 중 본회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기록물을 말한다.
- ③ 본 세칙에서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를 말한다.
- ④ 본 세칙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⑤ 본 세칙에서 “기록물관리자”란 기록물관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본회 기록물관리 과정에서 기록물을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 ⑥ 본 세칙에서 “기록물철”이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기구 등 특정 단위나 주제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 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 ⑦ 본 세칙에서 “기록물군”이란 기록물철이 임기 단위로 편철된 묶음을 말한다.
- ⑧ 본 세칙에서 “외부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격을 지닌 기록물을 말한다.
 1. 본 세칙 제정 이전에 본회가 생산한 기록물
 2. 본회가 생산하지는 않았으나 본회와 관련이 있는 계약서, 협약서 등의 기록물
 3. 기타 본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
- ⑨ 본 세칙에서 “메타데이터”이란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기록하는 모든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 ① 기록물관리기관은 본회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본회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③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된 기록물은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 및 기타 기록물관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 없으며, 파기의 경우 본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⑤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는 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비공개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접근·열람하였던 기록물관리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성원의 의무)

- ① 본회 회원은 이 규칙의 목적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진다.
- ②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이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회칙 및 이에 부수된 타 세칙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본회 회칙 및 이에 부수된 타 세칙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록물의 생산

제8조(생산의 원칙)

- ① 본회 모든 기구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시작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기록물은 전자문서와 인쇄물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생산한다.
- ③ 모든 기록물에는 기록물 작성자의 직책과 이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④ 각 기구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책임자는 각 기구의 장, 대표자, 또는 의장 등이며, 해당 기록물의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책임자에게 있다.
- ⑤ 작성자가 여러인 경우에는 각 작성자가 기록한 영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하나,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기록물의 책임자는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 ⑥ 기록물의 책임자는 상호 관련 있는 기록물들을 기록물철로 묶어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해당 행정사안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의무)

- ① 본회는 정책 또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조사·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결기구의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파일의 작성 및 공개는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에 따르며, 본회와 기록물관리기관은 작성된 회의록, 속기록 및 녹음파일을 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10조(기록물관리기관)

- ①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기록물관리기관이 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장은 기록물관리를 담당할 집행위원회 내부 국서를 지정하거나 집행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③ 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록물 관리의 총괄·조정과 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2. 기록물 관리 표준화 정책의 수립과 기록물 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3.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 구축과 표준화
 4. 기록물 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류·협력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타 학생기구, 학교 본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7.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
 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9.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평가
 10.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본조 제3항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관)

- ① 본회 모든 기구는 제5장에 따른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의무가 있다. 단, 해당 기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각 기구에 기록물 이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구는 15일 이내에 기록물을 이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의무가 있는 기구(이하 ‘기록물이관기구’라 한다)는 기록물을 생산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을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록물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기구는 제출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만약 기록물이관기구가 명백한 사유 없이 기록물 제출에 불응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기록물 이관 담당자에 대해 적절한 사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기록물의 보존

제12조(보존)

- ① 기록물관리기관은 기구 등 특정 단위나 주제 범위를 기준으로 기록물철을 생산한다.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기구의 임기 단위로 기록물철을 편철하여 기록물군을 생산하고 모든 기록물들의 순서는 생산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기록물이 누락되었을 경우 책임자와 기록의 종류 및 사유를 쓰고 공란으로 처리한다.
- ④ 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생산하고 기록물군과 함께 보관한다.
 1. 기록물철의 기록물 목록
 2. 기록물철 이관 일시
 3. 각 기록물철에서 누락된 기록물과 누락 사유
 4. 각 기록물철에 추후 포함된 기록물과 추가 사유와 일시
- ⑤ 모든 기록물은 원본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크기 등의 사유로 효율적인 보관이 어려울 경우 축소 복사할 수 있다.

제13조(보존의 장소)

- ① 기록물 보존의 장소는 총동아리연합회 기록물보관소(대강당 206호)로 한다. 단, 기록물의 특성에 따라 총동아리연합회실 등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② 전자문서의 경우 드라이브나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보존할 수 있다.

제14조(파기)

- ① 기록물을 파기하려는 경우 해당 기록물의 파기 여부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의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파기할 기록물의 목록 및 파기 사유를 보고한다.
- ② 이의 제기 기간은 본조 제1항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일주일로 한다. 이의 제기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기록물관리기관은 해당 기록물의 파기를 집행한다.

제5장 기록물의 종류

제15조(의결기구 기록물)

- ① 동아리 총회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 상정 요구 자료
 2. 소집공고문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4. 출석부
 5.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6. 회의록
 7. 속기록
 8. 녹음파일
 9. 그 밖에 동아리 총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② 동아리 총투표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명시, 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명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명시, 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구성 변동 공고문
4. 회의 소집요구서
5.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6. 안건 상정 요구 자료
7. 소집공고문
8.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총투표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9.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 상 동아리 총투표 및 그 관리와 관련된 자료
10. 그 밖에 동아리 총투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 상정 요구 자료
2. 소집공고문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4. 출석부
5.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6. 구성원의 결석 사전 통보 및 의결권 위임 관련 자료
7. 회의록
8. 속기록
9. 녹음파일
10. 그 밖에 동아리 대표자회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④ 동아리운영위원회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 상정 요구 자료
2. 소집공고문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4. 출석부
5.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6. 회의록
7. 속기록
8. 녹음파일
9. 그 밖에 동아리운영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⑤ 그 밖에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결기구와 관련되어 생산되는 자료는 기록물로 본다.

제16조(집행기구 기록물)

①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집행위원회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구 회의록

2. 사업, 정책, 행사 등과 관련된 기획서 및 보고서
 3. 집행위원회가 생산한 디자인 자료
 4. 각종 공문
 5. 집행위원회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예·결산안
 6. 그 밖에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및 집행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②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생산하는 기록물의 종류는 본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자치기구 기록물)

- ① 분과위원회와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기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기구의 장의 결정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1. 의결기구 기록물의 경우: 총회의 경우 제15조 제1항을, 총투표의 경우 동조 제2항을, 확대운영위원회의 경우 동조 제3항을, 운영위원회의 경우 동조 제4항을 준용한다.
 2. 집행기구 기록물의 경우: 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3. 특별기구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제18조 제1항, 법제위원회의 경우 동조 2항을 준용한다.
 4. 선거 기록물의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이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은 각 분과위원회 또는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가 규정하는 선거 관련 세칙으로 본다.
 5. 재정 기록물의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6. 회·세칙 기록물의 경우: 제22조를 준용한다.
 7. 그 밖에 자치기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②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된 일반동아리의 기록물 중 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외의 기록물은 해당 기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중앙동아리 신규등록 구비서류
 2. 중앙동아리 재등록 구비서류
 3.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구비서류
 4. 일반동아리 일반등록 구비서류
 5.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 상 운영 및 심사와 관련된 자료
 6. 그 밖에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된 일반동아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③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등록되지 않은 일반동아리의 기록물은 해당 기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 회칙>과 그 세칙, <국제캠퍼스 동아리연합회회칙>과 그 세칙, 각 자치기구의 회칙과 그 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자치기구와 관련되어 생산되는 자료는 기록물로 본다.

제18조(특별기구 기록물)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물은 제15조 제2항 및 제20조에 따른다.
- ② 법제위원회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명단(법제위원장 및 부법제위원장 직책 명시, 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회의 소집요구서

3. 소집공고문
 4.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출석부
 6.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7. 회의록
 8. 속기록
 9. 녹음파일
 10. 법제위원회가 작성한 법제에 근거한 해석 및 해석례
 11. 법제위원회가 발행 및 배포한 법제,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12. 자치기구의 요청에 따른 법제위원회의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자료
 13. 그 밖에 법제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③ 총동아리연석회의의 기록물은 제15조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단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명단(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및 그 사유,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소집공고문
 3.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4. 출석부
 5.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6. 회의록
 7. 속기록
 8. 녹음파일
 9.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10. 활동 내역 및 인수인계 사항 보고서(당해연도의 각 기구의 기록물의 책임자의 직책·임기·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11. 그 밖에 인수위원회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9조(집행위원회 감사 기록물)

집행위원회 감사의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위원 명단(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감사 구비서류 및 그 관련 자료(추가 제출 자료를 포함한다)
3. 총동아리연합회장이 감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소명 자료
4. 감사보고서
5. 집행위원회 감사에 따른 징계와 관련된 자료
6. 그 밖에 집행위원회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0조(선거 기록물)

선거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명시, 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 명단(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책 명시, 구성일, 자격,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구성 변동 공고문
4. 회의 소집요구서
5. 소집공고문
6. 회의 실시·결과 공고문 (회의에서 의결 안건이 진행될 경우 안건의 결의 여부도 기록하며 표결이 진행될 경우 찬성·반대·기권의 정확한 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7. 출석부
8. 회의 안건지 및 별첨 자료
9. 회의록
10. 속기록
11. 녹음파일
1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 상 선거 및 그 관리, 재정과 관련된 자료
13. 그 밖에 선거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1조(재정 기록물)

재정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결산안
2.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된 자료
3. 그 밖에 재정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2조(회·세칙 기록물)

① 회칙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본회 회칙
2. 구) 본회 회칙
3. 개정안
4. 개정안 공고문(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을 포함한다)
5. 제·개정 이력
6. 그 밖에 회칙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 세칙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본회 세칙
2. 제정·개정·폐지안
3. 제정·개정 이력
4. 그 밖에 세칙 관련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의 증진 및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23조(폐지기구 기록물)

본회를 구성하는 모든 기구 중 폐지되는 기구가 있을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기구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단, 해당 기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기구의 장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이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기록물의 공개 · 열람 및 활용

제24조(공개 원칙)

본 세칙이 규정하는 모든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비공개기록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비공개기록물로 분류한다.

1. 외부기록물 중 비공개를 전제로 수집된 기록물
2. 공개될 경우 본회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 감사 · 감독 · 입찰계약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록물
4. 본회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 기타 비공개기록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26조(정보공개청구)

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관 중인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기구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인쇄 기록물의 원본은 대여할 수 없으며, 기록물관리자의 감독 하에 해당 기록물관리기관 내에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통하여서만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기록물의 열람 사실을 별도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자는 그 자료에 대해 공개기록물로 전환할 것을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른 공개기록물로의 전환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제28조(기록물의 활용)

- ① 본회의 기록물은 학술·행정·의사 결정 등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 ② 본회의 각 기구의 업무 중 누락된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칙>

본 세칙은 제45대 총동아리연합회의 임기 종료 직후부터 시행한다.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시행에 관한 세칙

<목차>

제 1 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 2 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통칙	제5조 ~ 제12조
제2절 선거의 관리	제13조 ~ 제14조
제3절 동아리 총투표의 관리	제15조
제4절 재정	제16조
제 3 장 선거	
제1절 통칙	제17조 ~ 제20조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 ~ 제22조
제3절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3조 ~ 제31조
제4절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2조 ~ 제33조
제5절 시행세칙협의모임	제34조 ~ 제37조
제6절 선거운동	제38조 ~ 제47조
제7절 유세 및 선전	제48조 ~ 제54조
제8절 투표 및 개표	제55조 ~ 제60조
제9절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제61조 ~ 제64조
제10절 선거 부정	제65조 ~ 제66조
제11절 당선무효	제67조 ~ 제68조
제12절 선거무효	제69조 ~ 제70조
제13절 징계	제71조 ~ 제72조
제 4 장 동아리 총투표	
제1절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	제73조 ~ 제82조
제2절 개표	제83조 ~ 제87조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Yonsei University The General Student Club Union

전면 개정 2023.02.07
부분 개정 2023.03.07
전면 개정 2024.03.05
부분 개정 2024.10.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에 따라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분회”라 한다)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총투표에 적용하며 조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선거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분과위원회 선거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및 동아리 선거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 ④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3조(선거 방침)

- 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한다.
- ② 선거권은 각 중앙동아리에 최대 40인씩 주어진다. 단, 선거인단 등록 중에 최소 20인 이상 선거인단으로서의 등록을 필해야 하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확정한다. 반드시 선거인단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한다.
- ③ 공명선거를 보장한다.

제4조(세칙 밖의 판단)

- ① 이 세칙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의 판단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이하 “동운위”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②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선관위”라 한다)는 본조 제1항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통칙

제5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동선관위는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동운위가 자격과 권한을 위임한 특별기구이다.

제6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동선관위는 동운위를 통해 중앙동아리 회원 3~10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 ② 동선관위원은 동선관위 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할 수 없다.

제7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

- ①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를 대표한다.
- ②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가지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동선관위원장은 동선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8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 ① 동선관위의 임기는 동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② 동선관위원은 중앙동아리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구성 당시 해당했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즉시 동선관위원 직위가 박탈된다.

제9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동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및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① 동선관위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된다.
- ② 동선관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단, 입후보자 등록 무효 및 취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 ① 동선관위는 동운위의 심의를 거쳐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이하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동선관위를 도와 선거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될 수 없다.
- ④ 동선관위 집행위원회는 선거 종료 시 해산한다.

제1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동선관위는 선거 및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상의 사무실을 둔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제2절 선거의 관리

제13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 의무와 역할)

- ① 동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동선관위는 입후보 등록 마감일 5일 전까지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는 선거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⑤ 동선관위는 선거운동본부의 합동유세와 정책토론회를 기획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⑥ 동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⑦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보고받고 분과위원회 선거 관리를 지도·관리한다. 단,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다.
- ⑧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분과위원회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 ⑨ 동선관위는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불가할 경우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
- ⑩ 동선관위는 분과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관한 사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제한)

동선관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될 수 없다.

제3절 동아리 총투표의 관리

제15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 의무와 역할)

- ① 동선관위는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을 총괄한다.
- ② 동선관위는 본회 회원에게 각종 동아리 총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는 동아리 총투표에 필요한 물품과 자료집을 제작하고 부착·배부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는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재정

제16조(선거운동본부의 분담금)

- ① 동선관위는 시행세칙 협의모임(이하 “시세협”이라 한다)에서 분담금의 액수를 협의해야 한다.
- ② 분담금의 액수를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의 입후보 등록 이후 48시간 이내에 각 선본에 통보한다.
- ③ 각 선본은 투표시행일 5일 전까지 동선관위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각 선본은 분담금을 마감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선관위는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⑤ 동선관위는 각 선본에 부담이 최대한 가지 아니하도록 분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

제1절 통칙

제17조(선거시행원칙)

- ① 본회 모든 회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 사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를 보통·평등·간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 타당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분과위원회나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의 경우 각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③ 선거에 쓰이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본 간의 과도한 경쟁을 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 시기)

- 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는 매년 2학기 말에 동선관위의 결정으로 실시한다.
- ② 그 밖의 기구의 선거 시기는 각 기구의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9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본에 속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때에 이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책이나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언론단체의 공정보도의무)

본교의 언론단체는 선본 및 후보자의 의견, 토론회 등을 보도·논평하는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1조(선거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진다.

1. 중앙동아리: 중앙동아리 당 최소 30인에서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2. 국제캠퍼스 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당 최소 10인에서 최대 20인까지의 회원
3.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당 최대 60인까지의 회원

제22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칙 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1. 3학기 이상 등록한 학부 재적생
2. 본회의 회칙 제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8개월 이상 구성원으로 속한 자
3. (삭제)

제3절 선거공고와 입후보 등록

제23조(선거공고)

동선관위는 선거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입후보 등록 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선거운동본부 명칭)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거운동본부의 명칭(이하 “선본명”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동선관

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본부 색상)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는 선거운동본부의 색상(이하 “선본색”이라 한다)을 입후보 등록 시 동선관 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본은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실(이하 “선본방”이라 한다)을 각 호의 지역에 각 한 개 이하로 둘 수 있다.
 1. 신촌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2. 국제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 ②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동선관위에 선본방의 사용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선본은 입후보 등록 이전에 해당 사무실의 관리자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본방 외에는 제49조에 해당하는 유세 선전물을 비치할 수 없다.
- 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은 타 선본의 선본방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선본방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의 사무실(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다만, 과/반/독립학부 및 동아리의 방은 예외로 한다.
 2. 본교의 언론단체의 사무실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의 사무실

제27조(입후보자 자격)

피선거권을 가진 자만 입후보할 수 있다.

제28조(출마 형태)

출마형태는 “정후보 1인”의 형태 또는 “정후보 1인과 부후보 1인”의 형태로 한정한다.

제29조(구비 서류)

- ① 피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은 동선관위가 공고한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원서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추천인 서명서
 3. 정·부후보 소견서 각 1매(A4용지 1장 이내)
 4. 정·부후보 재적증명서 각 1매
 5. 정·부후보 컬러 및 흑백 사진파일
 6. 성명·학번을 포함한 선본원 명부
 7. 선거 공약 및 으뜸구호 파일
 8. 국문본 정책자료집
 9. 선관위 포스터용 정책파일

- ③ 마감 시간은 마감일 18시로 한다.

제30조(연서)

- ① 기간은 이틀간 진행하며, 첫째날 09시부터 이틀날 18시까지로 한다. 단, 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동아리 대표자회의 구성원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본회에 정식 등록된 동아리 회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제31조(등록무효)

- ① 입후보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선본·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마감 30분이 지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 ② 선본·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동선관위는 즉시 그 선본·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동선관위의 실수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여 미비 서류를 완비하여 익일 18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제32조(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 ① 동선관위는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동선관위원
 2.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
 3. 총동아리연합회 선본원
 4. 각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원
- ③ 단 본조 제2항제4호의 경우 각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성인지 교육과 인권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선본원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② 동선관위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본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③ 동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중 의무로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5절 시행세칙 협의모임

제34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지위)

시세협은 선거를 당해 사정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제35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구성)

시세협은 동선관위원과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한다.

제36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역할)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을 통하여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본 간 이견을 적극 중재하여야 한다.
- ② 이 세칙은 시세협을 통하여 합의되어야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동선관위는 이 세칙에 따라 유권해석 한다.
- ③ 각 선본은 시세협에서 선거운동본부방 사용을 합의한다.
- ④ 시세협에서 결정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제37조(시행세칙 협의모임의 운영)

- ① 동선관위원장은 시세협의 소집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시세협을 소집한다. 다만, 정기소집일 외에도 긴급한 경우 시세협을 소집할 수 있다.
 1. 입후보 등록일
 2. 합동유세의 전달
 3. 투표의 전달
- ② 선본에서 시세협의 소집을 희망할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장은 동선관위원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본은 반드시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서만 동선관위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세협에 참석하지 못할 시 선거운동본부장의 역할을 선본원 중 1인에게 위임하고 해당 선본원이 시세협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선관위는 위임사유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선본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세협에서의 합의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러하지 못한 경우 동선관위는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유권해석 하여야 한다.

제6절 선거운동

제38조(선거운동의 정의)

- ① 선거운동은 선거에 임하여 특정 선거운동본부를 당선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본회 회원은 선거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선거운동본부원으로서 이 세칙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39조(선거운동의 구성)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선본·후보자의 개인유세
2. 선본·후보자의 강의실유세
3. 선본·후보자의 동아리방 유세

4. 선본 · 후보자의 합동유세
5. 선본 ·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6. 선본 ·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선전
7. 선본 · 후보자의 모임과 단체 방문
8. 선본 · 후보자의 온라인 선거운동
9. 학내외 언론에의 보도

제40조(선거운동의 기간과 공간)

- ① 선거운동 기간은 확정 공고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 ② 토요일 00시부터 월요일 아침 06시까지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단,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 ③ 선거운동은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학내에서만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④ 선거운동은 동선관위에 사전에 등록된 자만 가능하며, 선거운동 시 동선관위에서 발부한 등록증을 패용해야만 한다.
- ⑤ 동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한다.

제41조(추천인 서명)

- ①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 · 단체는 유권자로부터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다.
- ② 선본을 준비하는 사람 · 단체는 추천인 서명 시 해당 선거의 언급과 정책의 기본방향에 한정하여 말할 수 있다.
- ③ 추천인 서명판(이하 연서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해 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의 사진 · 성명 · 약력 및 출마의 변
 2. 선본을 준비하는 단체의 명칭 · 으뜸구호 · 기치 · 표시 및 정책의 기본방향
 3. 동선관위에서 배포한 서명용지
- ④ 모든 연서판에는 동선관위 명의를 인증표식이 있어야 한다.
- ⑤ 이 밖에 추천인 서명의 세부지침은 시세협에서 다룬다.

제42조(선거운동본부원)

- ① 선본원은 선본에 소속한 사람으로서 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본원은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제4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회
 2.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사람(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의 대표자와 집행부)
 3. 본교 언론단체의 구성원
 4. 학생총회 · 학생총투표 ·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에 소속한 사람
 5. 본회에 등록된 중앙동아리 대표자
 6.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수수 받은 사람

- ② 선본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 ③ 이 세칙에서 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 회원 모두 선거의 선본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44조(선거운동을 위한 사퇴)

-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위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 ② 사퇴한 사람은 절차를 준수하여 선본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45조(학생회 및 언론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특정 후보자나 선본에 대한 지지나 비방을 할 수 없다.
 1. 학생회 공식기구(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독립학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위원회 및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 그 밖에 이에 준하거나 속하는 학생회 기구)
 2. 학내에 속한 언론단체
 3. 학생총회·학생총투표·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 및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인준한 단체
- ② 선본은 본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해당 단체”라 한다)의 선거운동을 발견할 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동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해당 단체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선거 비용의 제한과 공개)

- ① 투표일 전날 18시까지 각 건물 대형 선전물 옆에 선거 비용을 공개한다.
- ② 선거 비용은 150만 원으로 제한한다.
- ③ 동선관위는 본조 제2항을 위반한 선본에는 “주의” 조치를, 투표 전날 18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 선본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47조(그 밖의 사항)

이외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동선관위에서 심의 후 동운위에서 논의·결정한다.

제7절 유세 및 선전

제48조(유세)

유세는 개인유세·강의실유세·동아리방유세·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로 이루어지며 입후보 확정공고일 06시부터 투표 전날 18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방법이 제한될 수 있다.

제49조(유세선전물)

- ① 배포되는 모든 인쇄 매체는 동선관위의 검인을 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인쇄 매체는 전량 수거한다. 고의적으로 배포하였을 시에는 매체는 전량 수거하고 동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② 리플렛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대 2회에 걸쳐 발행할 수 있다.
 2. 1,2차 리플렛 총 부수는 1,000부 이상으로 한다. 자세한 부수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3. 리플렛의 크기는 A4 (210mm*297mm) 2매 이하로 한다.
4. 선거참여 독려문구, 투표일 등을 표지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 ③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량은 시세협에서 결정하며 각 선본에서 제작하고, 분과위원회 선거 자료집과 함께 동선관위가 합본으로 200부 이상으로 출판한다. 자세한 부수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2. 출판비는 동선관위가 총동아리연합회 예산에서 일정 정도 부담한다.
- ④ 대형 선전물(포스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형 선전물은 A0 크기로 하고, 시세협에서 정한 위치에 동선관위에서 부착한다.
 2. 칼라 인쇄를 금한다.
- ⑤ 소형 선전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게시기간, 선거참여 독려문구, 임의 철거 및 훼손 금지 안내문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A4 크기로 제한하며, 칼라인쇄는 가능하다.
 3. 인쇄 개수와 부착 위치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⑥ 기타 유세선전물(선본옷, 피켓 등)의 경우 선본의 요청에 따라 시세협에서 정하여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온라인 선거유세)

- ① 온라인 선거유세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후보자 및 선본원의 온라인 개인유세
 2. 선본의 온라인 선전물 게시
- ② 동선관위는 선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③ 후보자 및 선본원의 온라인 개인유세는 후보자 및 선본원의 본인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으로 이뤄지며 세부적인 방법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④ 각 선본은 온라인 유세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유세 선전물의 종류와 크기, 게시 횟수, 구체적인 게시처 그 밖의 사항은 시세협에서 합의한다.

제51조(언론을 통한 선거유세)

- ① 본교의 언론단체가 각 선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도를 허용하며 그 밖의 매체를 통한 보도 여부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② 본교의 언론단체는 각 선본의 공약·정책을 논평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신상에 대한 비방이나 공약·정책에 대한 비난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합동 유세)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합동유세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 정책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 ③ 각 선본에 주어지는 시간은 15~20분으로 제한하며, 정확한 시간 제한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④ 합동유세에서 각 선본 간의 순서는 시세협에서 정한다.
- ⑤ 합동유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세협에서 정한다.

제53조(정책토론회)

- ① 동선관위는 시세협에서 정책토론회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정책토론회의 세부적인 일정과 장소는 시세협에서 결정한다.

- ③ 동선관위는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 언론출판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54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

- ① 선본이 선전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본은 동선관위가 지정한 일시까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량 교체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② 동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제8절 투표 및 개표

제55조(투표절차 및 기간)

- ① 투표는 선거공고에 앞서 동선관위에서 전자투표와 용지투표 중에서 하나를 정하여 시행한다.
- ② 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최대 5일까지 투표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투표소)

투표소 설치 여부 및 위치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설치 장소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신촌캠퍼스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진행한다.
2. 국제캠퍼스는 Y플라자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제57조(투표소 선전물)

투표구에는 투표용지 사용법과 유의사항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단, 동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제58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선본명, 후보자 성명, 소속 동아리, 학번만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투표용지는 동선관위에서 제작, 동선관위장의 검인을 필한 용지를 사용한다.

제59조(참관인)

반드시 각 선본별로 각 투표소와 개표소에 참관인 1인씩을 두어야 한다.

제60조(개표)

- ①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개표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한다.
1. 동선관위원장의 검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기입 표식이 불분명하거나 규정 이외의 표식이 있는 것

제9절 당선공고 및 이의제기

제61조(상대적 다수 대표제)

- ① 단일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의 결과 찬성표가 유효표의 50% 이상이고, 찬성표와 반대표 간 표차가 오차보다 클 시 해당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 ② 두 개 이상의 선본이 출마한 선거의 경우, 개표 결과 득표수 1위와 2위 간의 표차가 오차보다 크면 득표수 1위인 선본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62조(당선공고)

동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63조(이의제기)

- ① 동운위는 개표 이후 당선 선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정한다.
- ② 선본에서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③ 선본이 본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선관위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 ④ 본회 회원은 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에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⑤ 동선관위는 제기된 이의를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제64조(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당선을 확정하고 해산한다.

제10절 선거 부정

제65조(선거 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 부정이라 한다.

1. 누군가 투표 방해,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 그 밖의 투표의 과정에 개입하여 조작한 경우
2. 누군가 개표의 결과를 조작한 경우
3. 후보자가 동선관위원, 선본원 또는 유권자에게, 선본원이 동선관위 또는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그 밖의 위에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제66조(선거 부정의 판단)

- ①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이의제기 기간 중 선거 부정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② 동선관위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동운위에 “선거 부정 판단의 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③ 동운위는 본조 제2항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여야 한다.
- ④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심되는 사건의 경위를 명백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에 관한 안건을 책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모든 경과를 본회의 회원과 각 선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동선관위와 동운위는 선거 부정의 안건을 논의할 때에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배석하여 해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제11절 당선무효

제67조(당선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논의를 거쳐 선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제66조에 따라 선본의 당선 이후 선거 부정이 발견된 경우
2. 제69조에 따라 선본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3. 당선 선본이 당선을 포기한 경우

제68조(당선무효의 공고)

동운위는 당선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를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절 선거무효

제69조(선거의 결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운위의 의결을 거쳐 선거를 무효로 한다.

1.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선거 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

제70조(선거무효의 공고)

동운위는 선거무효의 결정 이후 24시간 이내에 시기와 사유, 재선거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본회의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절 징계

제71조(선거운동본부·후보자의 자격박탈)

동운위는 선본·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선관위의 심의를 거쳐 선본·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본이 3회의 “경고”를 조치 받은 경우
2. 선본의 이중투표나 대리투표가 확인된 경우

제72조(제재조치)

① 동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동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대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② 선본이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시다발적이거나 연속적으로 저지른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A사안과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재를 조치한 이후에 동일한 사

안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A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2. 동선관위가 최초로 접수한 A사안에 대해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접수한 동일한 사안은 무효로 처리 (다만, 접수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한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한다.)

③ 동선관위는 의도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본에게 “주의”와 “경고”를 구분하여 제재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동선관위는 선본이 “주의”를 조치 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사안을 반복하는 경우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⑤ 동선관위는 선본이 3회 “주의”를 조치 받은 경우 “경고”로 전환한다.

⑥ 동선관위는 “경고”를 조치 받은 선본의 포스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고장을 부착한다.

1. 경고장에는 “경고”의 사유와 조치시기를 기재

2. A4용지 크기(297*210mm)로 제작

3. 첫 번째 경고장은 바탕색에 노란색을, 두 번째 경고장은 빨간색을, 세 번째 경고장은 검은색을 사용

4. 다음 날 08시부터 48시간 동안 부착 (다만, 토요일 0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06시까지는 선거를 중단하므로 부착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경고장을 철거한다.)

제4장 동아리 총투표

제1절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

제73조(진행기간)

동아리 총투표의 진행기간은 동아리 총투표 실시 공고일부터 의결사항 확정공고일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동아리 총투표 실시 공고
2. 투표기간
3. 의결사항 공고
4. 이의제기 기간
5. 의결사항 확정공고

제74조(투표방법)

- ① 투표는 현장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하되, 1인 1표여야 한다.
-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투표구의 지정)

- ① 동선관위 투표구는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지정한다.
1. 신촌캠퍼스
2. 국제캠퍼스

제76조(투표구의 설치)

- ① 동선관위는 지정된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② 기표소는 비밀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동선관위원을 둔다.

제77조(투표소 운영시간)

- ① 동선관위는 투표소 운영시간을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 ②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일의 종료일과 연장일에 한해 투표시간을 동선관위에서 3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전자투표의 투표 시간은 전자투표 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제78조(투표소의 출입금지)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1. 투표인
 2. 동선관위원
 3. 장애학생이 투표할 때 동행한 도우미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표소에 출입할 때에는 동선관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책 및 성명을 표시하는 명찰을 부착해야 하며, 이 명찰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9조(투표용지, 투표함)

- ①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한다.
- ②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그 서식과 규격은 동선관위에서 정한다.
- ③ 투표용지에는 동선관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80조(투표함의 봉인, 보관)

- ① 동선관위는 투표시간 종료 후 동선관위원의 서명 후 투표함을 봉인해야 한다.
- ② 동선관위는 봉인한 투표함을 동선관위 사무실로 옮긴다.
- ③ 동선관위는 투표함을 동선관위 사무실에 옮긴 후부터 투표소로 옮기기 전까지 동선관위의 관리하에 보관해야 한다.

제81조(투표의 연장)

투표일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동선관위는 최대 1일에 한하여 투표를 연장할 수 있다.

제82조(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로의 투표·개표 관련 실무 위임)

- ①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선관위와 협의하여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동선관위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동선관위는 위임받은 투표·개표 관련 실무를 이 세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의결 요건은 해당 단위의 세칙을 따른다.

제2절 개표

제83조(개표시작과 순서)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표를 시작한다.

1. 투표인명부 작성의 종료
2. 투표자수가 유권자수의 과반에 달함
3. 모든 투표함의 도착
4. 동선관위장 및 3분의 2 이상의 동선관위원 참석
5. 투표함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제8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동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두 군데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것

제85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어느 란에 기표한 지 투표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것
2. 하나의 란에 두 개 이상 기표하거나 겹치게 기표한 것
3. 기표란 이외에 기표하였으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86조(개표일과 개표장소)

- ① 개표일은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날 개표가 불가능할 경우 동선관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표장소는 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87조(의결사항 공고 및 이의제기)

- ① 동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로 의결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② 의결사항 공고 후 24시간을 이의제기 기간으로 한다.
- ③ 본회 회원은 투표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투표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동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의 제출은 이메일, 그 밖의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④ 동선관위는 이의제기 사항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총동아리연합회 심사 평가에 관한 세칙

2023.03.07.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① 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21조의 위임을 받아 본회 중앙동아리의 활동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의 목적(본회 회칙 제3조)과 사업(본회 회칙 제5조)을 달성함을 중시한다.
- ③ 본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큰 틀로 하되, 세부 사항은 본 세칙이나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심사의 대상)

- ① 심사의 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로 한다.
 1. 중앙동아리
 2. 국제캠퍼스 동아리
- ② 단과대학 동아리에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동아리연합회에 모든 것을 일임한다.

제3조(운영)

- ① 심사 평가에 관한 결정은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 ② 신규등록과 재등록에 관한 평가는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한다.
- ③ 승격 및 강등의 평가는 활동 보고서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가지고 심사한다.
- ④ 전항의 경우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될 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심사할 수도 있다.
- ⑤ 전 중앙동아리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기 지원금을 차등 분배할 수 있다.
- ⑥ 심사 평가 세부기준과 내용은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공정·특혜 시비 차단과 해당 동아리의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⑦ 심사 평가가 진행될 시에는 동아리운영위원과 참고인 이외는 그 누구도 함께 자리할 수 없다.

제2장 심사

제1절 중앙동아리 심사

제4조(포상 심사)

- ① 매년 재등록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기준에 따른다.
 1. 2학기 정기 지원금 추가 지급, 세부 기준은 당해 동아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주의·경고 누적 현황 삭제

② 1항의 1호의 경우에는 한 학기 정기 지원금 총액의 3%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③ 1항의 2호의 경우에는 부과된 시점이 오래된 순으로 차감하며 그 효력 집행은 1회에 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 1위: 경고 2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2. 평가 2~5위: 경고 1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3. 평가 6~15위: 주의 1회 범위 내에서 경고/주의/대표자회의 지각·조퇴 삭제(경고 2회 미만일시 잔여 효력은 자동 소멸)

4. 분과별로 최소 1개 동아리에는 포상을 보장하며, 그 조치는 주의 1회로 한다.

※ 본 호는 어느 한 분과에 1, 2, 3호에 해당되는 동아리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소 1개 동아리에게 포상의 혜택을 주기 위함

5. 대표자회의의 안건 상정에 앞서 포상과 징계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내·외 기관장의 추천이 있을 시에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경고 이하의 징계를, 동아리운영위원회를 통해 주의 이하의 징계를 삭제할 수 있다.

⑤ 4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내 기관은 학내 학생기구 혹은 학교 공식 기관·기구를 말한다.

2. 대외 기관은 사단법인 이상의 정부 등록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추천은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와 공적조서(동아리 주요이력, 수상경력, 공적내용, 증빙자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4. 추천의 내용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반드시 실제 확인이 가능한 공적이어야 한다.

5. 삭제되는 주의는 학기당(3월~8월/9월~내년 2월) 1회, 경고는 연간(3월~내년 2월) 1회로 제한한다.

⑥ 포상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1항의 경우 비공개, 4항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승격 심사)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승격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② 승격 심사 대상은 준동아리에 경우에는 2년 뒤, 정동아리에서 강등된 준동아리에 경우에는 1년 뒤로 한다.

③ 승격의 기준은 활동이 우수하고, 동아리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명확해야 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 기준도 포함할 수 있다.

④ 승격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강등 심사)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강등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② 강등의 기준은 본회 회칙 제126조 제1항에 의거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 기준도 포함한다.

③ 강등 심사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강등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승격과 강등의 특례)

- ① 승격과 강등의 대상의 동아리는 수는 중앙동아리 전체 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 ② 전 항은 급격한 동아리 사회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규등록 심사)

- ① 매년 9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인준할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를 선정한다.
- ② 본회 회칙 제115조에 의거하여 심사하되, 신규등록 대상 동아리는 본회 목적과 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자동 탈락한다.
 1. 동아리의 설립 목적 및 활동 범위가 전 학우를 대상으로 할 것
 2. 설립 목적이 건전한 대학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
 3. 설립 목적이 기존 중앙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
 4. 활동 범위가 기존 중앙동아리와 유사하지 않고, 전문성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아니할 것
 5. 동아리로서 체계가 안정적이고 활동이 정기적일 것
 6. 자신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 학우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2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7. 회원의 구성에 있어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년이 50% 미만일 것

제9조(탈퇴 심사)

- ① 일반 탈퇴에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 ② 중앙동아리(준동아리)의 경우 신규등록 후 2년 이내에 본회 회칙 제115조에 의거한 미비가 발견되거나 본 세칙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표자회의에 탈퇴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③ 임의 탈퇴의 기준은 본회 회칙 제117조 제9항 및 제10항에 의거하되, 동아리운영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④ 임의 탈퇴 심사 대상 동아리의 대표자를 소환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응답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⑤ 탈퇴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동아리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2절 국제캠퍼스 동아리 심사

제10조(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국제캠퍼스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제11조(국제캠퍼스 동아리의 자격 및 등록 절차)

- ① 국제캠퍼스 동아리는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절차를 거쳐 인준받은 동아리만이 1년간 지위를 얻는다.

② 일반등록 요건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캠퍼스 동아리 일반등록 신청서 1부

2. 회칙 1부

3.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및 활동 보고서 1부

3의2. 반드시 자신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연세인 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4. 연간 주요 사업 및 활동계획서 1부

5. 국제캠퍼스 생활 단위 재학생 10명 이상의 회원 명단(단, 한 단과대, 하우스의 비율이 50% 이하) 1부

6. 정회원(재적생)의 재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재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등)

③ 등록 절차는 본회 회칙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하며,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인준한다.

제12조(국제캠퍼스 동아리 심사)

① 동아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결산안 1부

1의1.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명세서 등)를 첨부

1의2. 반드시 결산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잔액증명서 1부를 함께 제출

2. 연간 예산안 1부

3. 기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총동아리연합회 의사 진행에 관한 세칙

2023.03.07. 전면 개정

제1조(총칙)

- ① 본 세칙은 본회 회칙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민주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세칙에 대한 이안(異案)이 있는 경우 기타 의사결정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확정한다.
- ③ 본 세칙은 해당 기구의 개회에서 폐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2조(회의 진행 원칙)

- ① 회의 공개의 원칙
- ② 발언 자유의 원칙
- ③ 다수결의 원칙
- ④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 ⑤ 일의제의 원칙에 따라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심의하지 않는다. 단, 둘 이상이 안건이 서로 관계 있어 부득이하게 동시에 논의해야만 하는 경우, 동시에 논의하는 것을 해당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으나 표결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 ⑥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으나, 해당 사항에 관한 새로운 사실 혹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 있는 경우 번안(표결의 재심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안건 채택 방법 및 안건 상정)

- ① 회의의 안건 검토 및 상정 순서에서 의사 일정 및 안건이 확정된다.
- ② 안건 채택 및 안건 상정의 순서가 끝난 후에 있어서의 논의 순서 변경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안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되는 안건은 다음의 동아리 대표자회의나 동아리운영위원회로 이월한다.

제4조(회의의 순서)

회의 진행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개회
2. 속기자 인준
3. 의사일정의 확정
4. 안건 토론 및 의결
5. 폐회

제5조(개회 선언)

회의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제6조(속기자 인준)

① 속기자의 인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속기자 소개
2. 인준 이의 여부 확인
3. 속기자 인준

② 속기자 인준에 관하여 본조 제1항제2호의 절차에서 이의가 존재하는 경우 질의 응답을 통해 이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속기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한다.

③ 회의 중 속기자를 교체하는 경우 본조 제1항에 따라 속기자 인준을 진행한다.

제7조(안건 토론 및 의결)

안건 토론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의 발제
2. 질의 응답
3. 찬반 토론
4. 의결

제7조의 2(안건의 발제)

안건의 제안자 혹은 그 대리인이 안건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안건의 제안자와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이 발제를 진행한다.

제7조의 3(발언)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이후 발언해야 한다.

② 발언 시 발언자는 소속, 성명 또는 비표번호를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부연설명을 한다.

③ 발언 시간이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발언 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각 의안에 대한 발제 : 20분 이내
2. 질의 및 응답 : 5분 이내
3. 의사진행 발언 및 기타 발언 : 3분 이내

제7조의 4(질의응답)

①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다.

② 발제자는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회의 참여자들도 응답할 수 있다.

③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이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질의자가 더 이상 없다면 의장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한다.

⑤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응답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구성원의 요청으로 질의응답의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제7조의 5(찬반 토론)

①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를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② 의장은 찬반 토론에서 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토론의 자격 제한)

① 발제자는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의장의 찬반 토론 참여가 필요한

경우 출석 단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참여를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수정안의 제안과 의결)

- ① 수정안은 찬반 토론 중에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의결 과정은 원안에 대한 의결과정과 동일하다.
- ③ 수정안은 원안의 부분 혹은 전부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자는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9조의 2(수정안 제안의 원칙)

- ① 다음 각 호의 따라 수정안은 성립되어 의제가 된다.
 - 1.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 출석 단위 5분의 1 이상이 재청하는 경우
 - 2.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출석 단위 3분의 1 이상이 재청하는 경우
- ② 재청이 없다면 수정안은 의제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관련 발언이 반복되면 의장이 제지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철회)

안건의 제안자 또는 의장이 안건의 철회를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의 2(안건 철회의 제안과 의결)

- ① 본 세칙 제10조에 따라 철회를 제안한 경우 철회의 안이 성립되어 의제가 된다.
- ② 2명 이상이 제안한 안건의 경우, 안건의 제안자가 철회를 제안할 때 제안자의 과반수가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③ 철회의 안에 대한 의결 과정은 원안에 대한 의결과정과 동일하다.

제10조의 3(안건 철회의 원칙)

- ① 철회된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 ② 철회의 안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철회를 제안할 수 없다.

제11조(토론의 종결)

- ①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한다.
- ②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구성원의 요청으로 토론의 종결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제12조(표결의 진행)

- ① 표결은 해당 회의장에 있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 ② 표결 진행 전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야 한다.
- ③ 표결 진행 전 의장은 안건명과 표결에 부치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 이후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 ④ 표결할 때에는 찬성부터 물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서 계산한다.
- ⑤ 수정안이 가결될 시 다른 수정안들과 원안에 대한 표결은 진행하지 않는다.
- ⑦ 표결은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진행한다.

제13조(폐회)

상정된 모든 안건의 토론 및 의결이 끝난 후 의장이 폐회를 선포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 ① 회의의 공개의 원칙은 본 세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 ② 회의 공개의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회의록의 공개
 - 2. 속기록의 공개
 - 3. 녹음 파일의 공개
 - 4. 참관을 통한 공개

제15조(회의록의 공개)

- ① 회의록은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단, 회의록 작성이 늦어지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명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개회, 휴회, 폐회의 일시
 - 2. 출석단위의 수 및 단위명
 - 3. 속기자의 성명 및 직위
 - 4. 안건명
 - 5. 의사
 - 6. 표결 수
- ③ 동아리 대표자회의의 경우 본조 제2항제2호 중 단위명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16조(속기록의 공개)

- ① 모든 의결기구는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개회 시 속기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속기록은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단, 속기록 작성이 늦어지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명확한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제17조(녹음파일의 공개)

- ① 의결기구의 회의에서도 필요한 경우 녹음을 진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② 녹음을 진행하는 경우, 녹음 사실을 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녹음파일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에 따라 녹음파일을 공개한다.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에 관한 세칙

제정 2024.05.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아리연합회’라 한다) 소관 자치공간을 대관·유지·관리하는데 있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간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공간 사용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총동아리연합회 대관 가능 자치공간(이하 ‘자치공간’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른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3층 313호)
2. 공연연습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지하 1층 B11-5호)
3. 분과위원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지하 1층 B11-8호)
4. 다목적실 B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Plaza 지하 1층 B326호)
5. 다목적실 C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Plaza 지하 1층 B313호)
6. 다목적실 D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Plaza 지하 1층 B314호)
7. 다목적실 E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5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Y-Plaza 지하 1층 B315호)

제2장 운영·관리

제1절 통칙

제3조(운영·관리)

운영·관리는 총동아리연합회 집행위원회가 한다.

제4조(역할 및 권한)

본 세칙 제3조에 따른 운영·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

2. 자치공간 대관 절차
3. 자치공간 개방 요일 및 시간
4. 자치공간 운영에 관한 기타 방침

제2절 운영 규정

제5조(운영 규정의 목적)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은 동아리의 활동 지원과 공정한 대관 문화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 규정)

- ①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은 본 세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집행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 ②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공간 개방 요일, 시간, 대관 신청 기한
 2. 자치공간 대관 절차 및 대관 방법
 3. 자치공간 운영에 관한 기타 방침
- ③ 운영 규정은 운영·관리주체가 정하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④ 본 조 3항의 운영 규정을 정했던 당시의 총동아리연합회장단이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 제 59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새로이 선출된 총동아리연합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운영·관리주체가 조속히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정하고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
- ⑤ 운영·관리주체는 인준받은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을 총동아리연합회 홈페이지 및 기타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3절 대관 운영 시간

제7조(개방)

- ① 자치공간 개방 요일, 시간, 대관 신청 기한은 본 세칙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주체가 정한다.
- ② 운영·관리주체는 개방 요일 및 시간 내에서 대관 편의에 따라 대관 시간 단위를 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
- ③ 운영·관리주체는 개방 요일, 시간, 대관 신청 기한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

제4절 대관 절차 및 방법

제8조(대관 절차)

- ① 운영·관리주체는 대관 절차를 투명·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 ② 대관 절차는 신청, 신청 접수, 신청 심사 및 심사 결과 통보를 순서로 한다.

제9조(대관 자격)

자치공간은 다음 각 호의 단체가 대관 받을 수 있다.

1. 연세대학교 소속 중앙동아리, 국제캠퍼스 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 일반동아리

2.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과 총동아리연합회칙에서 규정한 집행기구•의결기구•자치기구•특별기구•특별자치단체
3. 기타 총동아리연합회장이 인정한 단체

제10조(대관 신청)

- ① 본 세칙 제9조의 단체가 자치공간을 대관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운영•관리주체에게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 ② 대관 신청은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단체가 별도로 정한 경우 대표자가 아닌 단체 구성원이 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신청 접수)

운영•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선착순 신청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는다.

제12조(대관 신청 심사)

운영•관리주체는 본 세칙 제9조의 대관 자격 및 본 세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한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반려를 심사한다.

제13조(대관 심사 결과 통보)

- ① 운영•관리주체는 대관이 승인되면 신청단체의 대관 시작일 전 일 19시까지 대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신청단체에 통보한다.
- ② 운영•관리주체는 대관이 반려되면 신청단체의 대관 희망 시작 시각 24시간 전까지 신청 단체에 통보한다.

제14조(대관 방법)

- ① 자치공간 대관 방법은 일반 대관, 정기 대관, 장기 대관, 사전 대관으로 한다.
- ② 운영•관리주체는 각 대관 방법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일반 대관)

- ① 일반 대관은 운영•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일회적으로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일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는 대관 희망일 기준 7일 전 09시부터 대관 희망일 2일 전 18시까지 대관을 신청해야 한다.
- ③ 일반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 대관)

- ① 정기 대관은 운영•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주기적으로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정기 대관은 매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정기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운영•관리주체는 정기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의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하여 정기 대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예정된 정기 대관일 8일 전 취소하지 않고 정기 대관 받은 자치공간을 미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잔여 정기 대관을 모두 취소한다.

제17조(장기 대관)

- ① 장기 대관은 운영•관리주체가 자치공간을 하루 이상 대관 받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장기 대관의 신청 기한은 운영•관리주체가 정한다.
- ③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장기 대관 신청단체의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하여 장기 대관 여부를 의결한다.

제18조(사전 대관)

- ① 사전 대관은 본 세칙 제15조 제1항의 일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가 중요 행사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보다 일찍 대관을 신청해야 할 경우, 운영•관리주체가 예외적으로 사전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전 대관의 신청 기한은 운영•관리주체가 정한다.
- ③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사전 대관의 신청단체의 사전 대관 필요성, 활동 계획 및 내용을 심의한다.
- ④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사전 대관의 승인 또는 반려를 직권으로 결정한다.

제19조(추가 대관)

- ① 추가 대관은 본 세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관이 승인된 단체가 추가로 대관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관리주체가 해당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대관일 기준 2일 전 18시부터 1일 전 18시까지 대관 희망 자치공간에 대해 타 단체에 의한 본 세칙 제10조에 따른 대관 신청이 없으면, 운영•관리주체는 선착순에 따라 추가 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추가 대관의 세부적인 방식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5절 대관 공간 관리

제20조(사용단체의 의무)

- ① 본 세칙 제14조 제1항 및 제19조 1항에 따라 자치공간을 사용하는 본 세칙 제9조의 단체(이하 '자치공간 사용단체'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1. 운영•관리주체가 정한 절차와 운영 규정에 따른 대관 신청과 이용
 2. 공간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의 금지
 3. 사용 중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안전관리
 4. 공간 내 시설물 훼손 및 분실 유의
 5. 공간 사용 후 정리 정돈과 청결 유지
 6. 입•퇴실 시 전등 및 냉/난방 기기 전원 확인
- ② 자치단체 사용단체는 별도로 운영•관리주체가 정한 각 공간의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의무 위반단체에 대한 조치)

- ①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일반 대관의 경우: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

2. 정기 대관의 경우

가.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

나. 잔여 정기 대관이 있으면 일괄 취소

3. 장기 대관의 경우

가.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2주간 대관 자격 제한

나. 잔여 장기 대관이 있으면 일괄 취소 및 즉시 퇴거

4. 사전 대관 및 추가 대관의 경우: 본 조 제1항 제1호와 같다.

- ②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3번 이상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대관 마감일 다음 일 포함 3개월간 대관 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공간의 반납)

- ① 자치공간 사용단체는 대관 시간의 종료, 사용 목적의 중단, 사용 자격의 상실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공간 반납 시에는 자치공간 사용단체가 공간을 배정받은 이후로 변경시킨 일체의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치공간 사용단체는 본 세칙 제2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총동아리연합회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칙

2023.03.07. 전면 개정

2024.09.10. 전면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칙>(이하 ‘본회 회칙’ 이라 한다.) 제140조의 위임을 받아 의결·집행·자치·특별기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여, 본회 회장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본회에 대해 본회 회원들의 신뢰를 함양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원칙)

- ① 본 세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② 지원금의 예산안은 5월 대표자회의(정기회)와 12월 대표자회의(정기회)에서 공개한다.

제3조(지원금의 종류)

- ① 지원금의 종류는 정기 지원금과 특별 지원금으로 나뉜다.
- ② 정기 지원금은 분과위원회와 중앙동아리 정동아리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다.
- ③ 특별 지원금은 본회 의결·집행·자치·특별기구의 공적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제2장 지원금

제1절 정기 지원금

제4조(정기 지원금의 산정)

- ① 정기 지원금의 기본 액수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각 중앙동아리의 정기 지원금은 반기별로 전체 지원금 총액 규모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③ 분과위원회가 사고 단위인 경우 정기 지원금의 3분의 1을 삭감한다.
- ④ 중앙동아리 정기 지원금 가감의 경우 본회 회칙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제5조(정기 지원금의 지급 시기)

정기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5월 대표자회의(정기회)와 12월 대표자회의(정기회) 소집일 기준으로 한 달 내외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그 시기는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정기 지원금의 분과위원회로의 지급 등)

- ① 총동아리연합회장은 분과위원회 정기 지원금 총액을 수령한다.
- ② 분과위원회는 정기 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동아리운영위원회 개회 전까지 총동아리연합회장에게 사업계획서와 이전 반기 정기 지원금 결산안을 제출한다.
- ③ 동아리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서와 결산안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 지원금 액수를 결정한다.
- ④ 분과위원회 정기 지원금 중 일부는 특별지원금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가 사고 단위가 되면 정기 지원금 잔액을 특별지원금으로 환수한다.

제2절 특별 지원금

제7조(특별 지원금의 산정)

특별 지원금의 지급 여부, 금액의 규모, 지급 대상, 지급 시기, 기타 특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8조(특별 지원금의 지급 등)

- ① 특별 지원금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영사업비: 동아리박람회, 동아리대표자워크숍, 총동아리연합회 선거, 기타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적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
 2. 특별활동지원비: 회원 전체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
 3. 자치기구지원비: 자치기구가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학교 밖의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에 지원하는 비용
- ② 자치기구지원비는 자치기구의 산정에 의해 지급한다.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 운영 규정

제정 2024.06.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자치공간 대관에 관한 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세칙 제2조에 따른 대관 가능 자치공간(이하 ‘자치공간’이라 한다) 대관의 구체적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요일과 시간)

- ① 총동아리연합회 대관 가능 자치공간의 개방 요일과 시간은 매일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 ② 자치공간의 대관 시간은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맞게 대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09:00 - 12:00
 2. 12:00 - 14:00
 3. 14:00 - 16:00
 4. 16:00 - 18:00
 5. 18:00 - 20:00
 6. 20:00 - 22:00

제3조(대관 절차와 방법)

- ① 자치공간의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칙 제9조의 단체(이하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라 한다)가 자치공간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총동아리연합회 공식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는 본조 제1항의 전자우편의 제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관 희망 날짜
 2. 대관 희망 시간대
 3.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명
 4. 희망 대관 자치공간
- ③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는 본조 제1항의 전자우편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의 대표자명과 연락처
 2. 활동 인원 수
 3. 행사의 내용
 4. 활동 책임자의 성명, 직책, 연락처
 5.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

제4조(대관 기준)

- ① 한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는 하루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간대 중 최대 세 시간대까지만 대관할 수 있다.
- ② 한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는 일주일에 최대 세 번만 대관할 수 있다.

제5조(대관 신청의 하자)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채로 신청한 대관은 무효이다.

제6조(대관 신청 시간)

자치공간 대관 신청 시간은 자치공간 대관 신청단체가 가장 마지막에 보낸 전자우편의 수신 시간으로 한다.